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
해 개방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사용자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시설 개방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을 통보받은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을 위해 학교 측과 동호회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다방면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끝내 학교가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120여 명의 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10여 년 동안 해오던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연간 계획과 방침 등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현행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개방 제한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용 신청자의 권리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 허가 신청 시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사고예방·질서유지 등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로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 개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시설 사용 허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